

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장례식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3. 6. 19.(월)

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차주식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자: 차주식·정근수·배진석·도기욱·한창화·최덕규·최병근·허 복
정한석·조용진·박승직·남진복·박영서·백순창·김창기·남영숙
윤승오·김창혁·김대진·최병준·이선희·이충원·윤종호·권광택
박채아·황두영 의원(26명).

2. 제안이유

-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
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
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대상 기관과 기관의 예산확보 및
물품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(안 제4조)

-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, 사용교육, 대피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
- 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
- 「재난안전산업진흥법」 제16조
- 「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3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불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불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불임
- 비용추계서: 불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예고기간: 2023. 6. 2. ~ 6. 7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56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필요성

- 도내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화재사고로 불에 의한 화상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하며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을 조금이라도 흡입하는 경우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,
- 경상북도내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 화재관련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방연물품 설치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제1조,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
- 제3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여야 할 대상시설과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예산범위내에서 방연물품을 비치 할 수 있도록 하고, 방연물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도지사가 정하여 방연물품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제4조, 제5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 교육,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연물품의 구입,

비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근거를 규정함.

- 제6조는 도지사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, 방연물품 사용 및 대피 훈련,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,
- 최근 우리도의 경우 2022년 화재건수 3,237건 중 사상건수가 191건으로 이중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비율이 42.4%로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,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, 유독가스에 노출될 경우 대피 능력을 저하시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화재의 안전사각지대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,
- 금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 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, 보육시설, 기타시설 등에 방연 물품을 비치하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,
-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

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향후 방연물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안전성이 입증된 인증제품을 계획단계부터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이 되어야 하며, 정기·수시 점검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,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는 만큼, 사전에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

참고 1

시도별 조례현황 및 경상북도 화재현황

□ 경상북도 화재 사상 건수 출처 : 소방청,2022

구분	화재 건수	사상건수										
		계	간헐	붕괴	넘어짐	복합 원인	연기 유독 가스	열상	뛰어 내림	화상	미상	기타
전국	40,113	2,668	5	16	92	52	1,135	76	37	1,065	57	133
경북	3,237	191	0	0	2	23	81	6	1	75	8	15

□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출처 : 재난안전실,2022

시도명	법령명	법령종류	제정일자	비고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	조례	2020. 3. 30.	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조례	2023. 3. 31.	
경기도	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조례	2020. 5. 19.	
충청북도	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	조례	2021. 12. 31.	
충청남도	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조례	2022. 12. 30.	
경상남도	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조례	2020. 10. 8.	
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조례	2020. 6. 10.	